

의안번호	2212382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F464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석유화학산업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
석유화학사업 합병 및 노후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석유화학산업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현행 기술별 시설투자액과 구분하여 공제율을 인상 － 석유화학산업시설: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 ※사업재편(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): ① 합병·분할·주식이전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, 신기술 도입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 － 공제율(%): (현행) 일반기술의 경우 중소10, 중견5~7.5, 대1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30, 중견 20~30*, 대 20 ※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은 30%의 공제율 적용 － 적용기한: 2029.12.31.	
2	안 제104조의36(석유화학산업의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)	○ 석유화학산업내 법인 합병 이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신설 － 특례대상: 석유화학산업내 합병 이후 합병등기일 1년 이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－ 특례내용: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－ 적용기한: 2028.12.31.	
3	안 제104조의37(석유화학사업의 노후자산 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신설 － 특례대상: 노후자산을 양도하는 석유화학사업자 － 노후자산 요건: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자산 ②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산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－ 특례내용: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－ 적용기한: 2028.12.31.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4조의36(석유화학산업의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04조의37(석유화학사업의 노후자산 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, 석유화학산업내 합병 및 노후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, 안 제104조의36, 안 제104조의37)

○ 안 제24조는 현행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석유화학산업시설을 구분하여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－ 공제대상: 석유화학산업시설에 투자하는 석유화학사업자

※ 석유화학산업시설: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로, 사업재편은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의 행위를 의미

- ① 합병·분할·주식이전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
-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, 신기술 도입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

－ 공제내용: 현행 기술별 투자와 구분하여 20~30%의 공제율을 상향 적용

－ 적용기한: 2029.12.31.

[표 1]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·기업규모별 공제율 비교

(단위: %)

	현행				개정안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	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	반도체기술 사업화시설 등	석유화학 산업시설
중소기업	10	12	25	30	30
중견기업	5~7.5 ¹⁾	6~9 ¹⁾	15~20 ¹⁾	20~25 ¹⁾	20~30 ¹⁾
대기업	1	3	15	20	20

주: 1)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공제율을 우대 적용

- 안 제104조의36은 석유화학산업내 법인 합병 이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연도별로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변동이 예상됨
 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합병 이후 1년 이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나, 이후 양도차익이 분할 익금산입되는 사업연도에는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등 연도별로 세수효과의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
 - 특례대상: 석유화학산업내 합병 이후 합병등기일 1년 이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
 - 특례내용: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
 - 적용기한: 2028.12.31.
- 안 제104조의37은 석유화학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(노후자산)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연도별로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변동이 예상됨
 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노후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나, 이후 양도차익이 분할 익금산입되는 사업연도에는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등 연도별로 세수효과의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
 - 특례대상: 노후자산을 양도하는 석유화학사업자
 - ※ 노후자산: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
 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자산
 - ②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산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
 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
 - 특례내용: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
 - 적용기한: 2028.12.31.

- 안 제24조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시설로 규정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시설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제율이 인상되는 시설투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－ 또한, 석유화학산업시설의 요건인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공급 및 수요구조 변화, 기술 및 유통구조 변화, 경기순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향후 석유화학산업시설의 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 - 또한,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시설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석유화학산업시설의 투자 규모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참고로,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,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는 2025년 6.8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지만, 이 중 기업규모별로 공제대상이 되는 석유화학산업시설의 설비투자는 구분되지 않음

[표 2] 석유화학산업 설비투자 추이: 2021~2025년(전망)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(잠정)	2025(전망)
연구개발비	50,289	59,875	85,760	79,996	68,122

자료: 산업은행,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, 각 연도

- 안 제104조의36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석유화학산업 내에 합병의 발생과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석유화학산업내 합병의 발생 및 합병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석유화학산업내 합병 발생시 법인간 중복자산의 양도시점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특례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기업간 합병의 발생요인은 기업의 재무상황 등 내재적인 요인 외에도 경쟁심화, 기술 확보, 신규시장 진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안 제104조의37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노후자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추정하여야 하나, 노후자산 요건 등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,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노후자산의 요건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노후자산의 규모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음
 - 노후자산의 요건인 내구연한, 생산능력 및 산업경쟁력을 판단하는 방법, 에너지효율 기준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어, 현 시점에서 산업내 노후자산의 규모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음
 - 또한,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노후자산의 양도차익 및 처분시점 등을 예상하여야 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특례신설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